

의안번호	제664호
의결 연월일	2014년 6월 일 (제 330 회)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4년 6월 2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664
----------	-----

제출연월일 : 2014년 6월 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운영·관리하였던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청원군(하수도사업소)으로 권한이 이관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현행조례 붙임

## 5. 관계법령 발취 : 해당없음

##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행조례

## □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위탁·운영 및 비용부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권자"라 함은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를 관장하는 충청북도지사를 말한다.
2. "사업소장"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운영권한을 권리자로부터 위임·위탁 받은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3. "사업자(장)"라 함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내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청원군수가 사업자가 된다.
4. "부담금"이라 함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시설 투자적립금, 유지관리비 및 기존부과금 등 비용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운영·관리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 처리시설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처리시설의 위탁)** ① 관리권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이라 한다)에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리공단등이 설립되기 전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에 위임·위탁할 경우 이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에 관한 사항등)** ① 관리권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내용에 위탁내용, 위탁비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및 업무, 계약 위반시의 책임,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관리권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처리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 및 방법)** ①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상황, 사업계획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후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충청북도조정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권자의 사전승인 없이 처리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리권자의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위·수탁기간)** 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협약 할 수 있다. 다만, 관리공단등이 설립된 경우 관리공단등에 운영관리 업무를 이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기간 만료일 3개월전까지 위탁운영실적 등을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운영실적 등을 제출할 때에는 관리권자는 협약에 의한 성실한 업무수행 여부를 검토하여 협약기간 만료일 2개월전까지 재협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관리권자는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운영관리 협약을 위반 하였을 때
4. 이조례에 의한 관리권자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관리권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위탁비용등)** ① 처리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관리공단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에 대하여는 관리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사업년도마다 수탁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가 제2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오·폐수의 유입)** ① 오·폐수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오·폐수의 유입, 배수시설의 설치, 오염물질, 배출기준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는 부담금을 사업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의 부담대상자의 범위, 선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 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의 징수유예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생활보전)** 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시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주민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